

INNOPOLIS⁺



ANSAN INNOVATION CLUSTER

경기안산강소특구

경기안산강소특구 INNODESK0807이란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해결 및 사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돕는 One-Stop 프로그램



INNODESK0807 의미

INNOPOLIS + HELP DESK = INNOPOLIS HELPDESK 0807 → INNODESK 0807
안산 강소 특구 지정일 2019년 08월07일

INNODESK0807

1 지원대상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공공연구기관 우선 매칭 지원
***특화분야 “ICT융복합 부품·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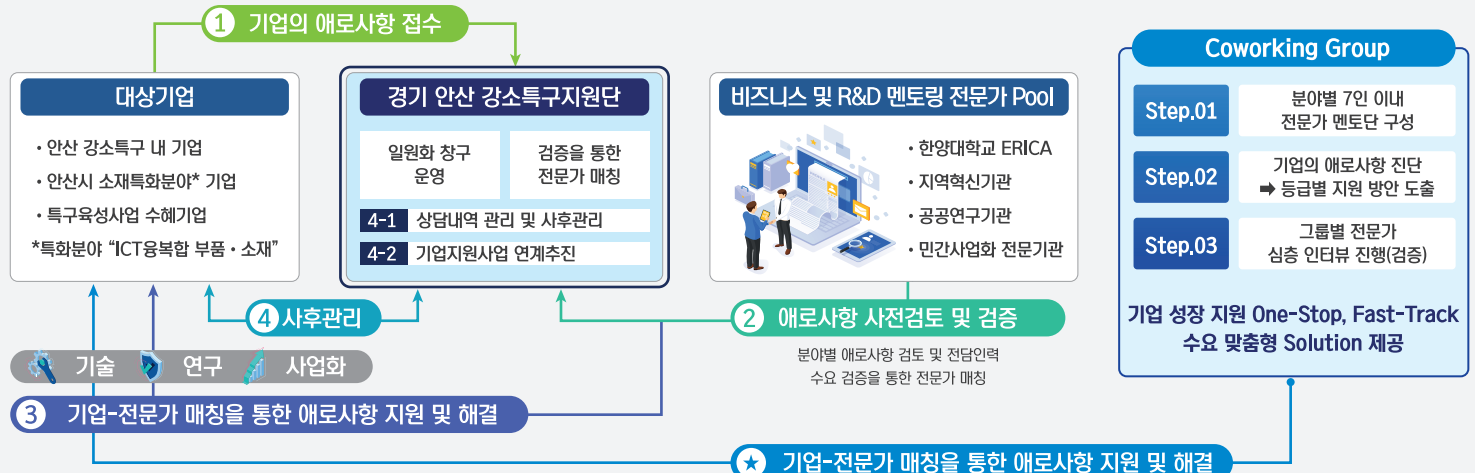
안산 강소특구 내 기업	안산시 소재 특화분야* 기업	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	-----------------	-------------

2 지원규모

- ✓ 기업당/전문가당 최대 60시간 멘토링 지원 가능
- ✓ 동일분야 멘토링의 경우 주 1회 가능 (최대 4시간/1일)
- ✓ 별도의 기업부담 비용 없음

*경기 안산 강소특구지원단에서 멘토링 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3 프로그램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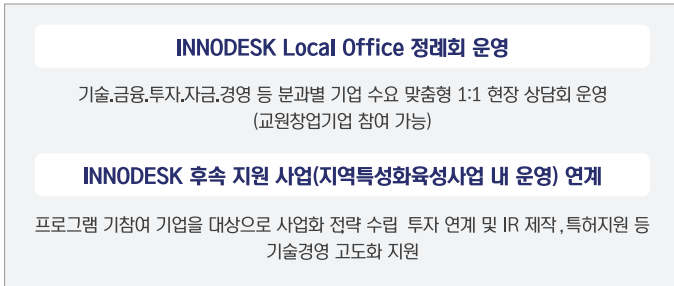
4 지원분야

- 기술지원**
기술/연구자 매칭, 기술개발 (R&D) 등
- 시험분석·인증**
국내외 시험인증 방법
- 투자,IR 지원**
IR, 펀딩, 자금지원을 위한 멘토링 등
- 사업화 전략수립**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및 신사업 창출 등
- 경영지원**
특허, 회계, 경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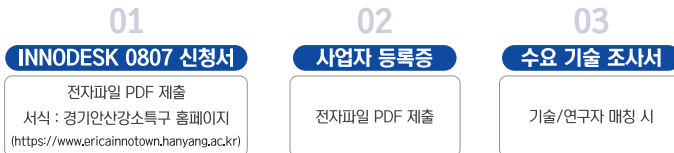
5 프로그램 운영 절차



6 23년 신설 운영 프로세스



7 신청서류



8 지원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E-mail 접수**
 신청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필요로 하는 제품/기술/비즈니스 상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e-mail 접수
- **사업계획서 및 양식 다운로드**
 경기안산강소특구홈페이지 (<https://ericainnotown.hanyang.ac.kr/>)
- **문의처**
 담당부서 : 한양대학교 ERICA 강소특구지원단
 사업담당자 연락처 : 최유리 매니저 ☎ 031-400-4872 ✉ glassc1203@hanyang.ac.kr

강소특구 특성화 육성 사업 이란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해결 및 사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돕는 One-Stop 프로그램

1 사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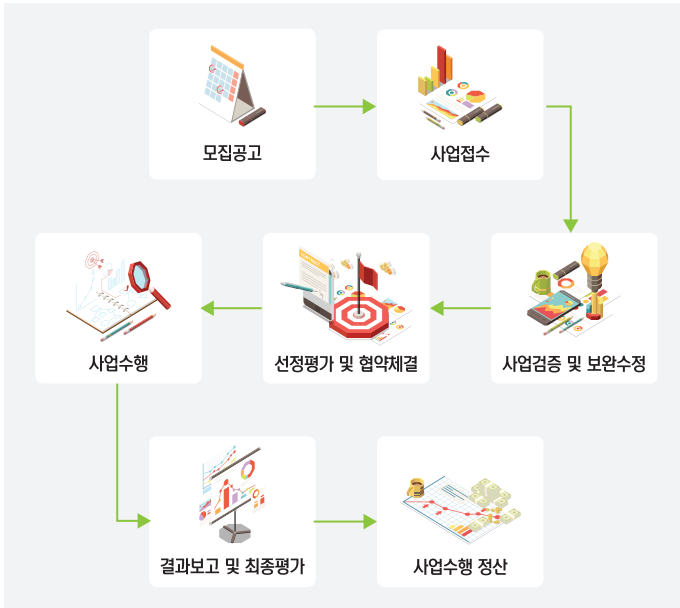
- 사업 예산** : 700 백만원 (지방비)
- 사업 기간** : 최대 1년 이내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행)
- 지원 대상** : 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외 기업 (단, 2020~2022년도 동 사업 지원 기업 제외)

- ① 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 기업
- ② 경기 안산시 소재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경기 안산 강소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창업기업

- 지원 사업**

 - 1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사업
 - 2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
 - 3 INNODESK0807 후속 연계 지원

2 사업 추진 절차



3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지역특화기업성장지원사업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하여 기업지원 일원화 창구 운영을 바탕으로
기업 수요에 적합한 지역 혁신 인프라 연계를 통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분석·인증 지원(신뢰성 확보) 추진



지원방식

간접 지원 방식 :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사업비지급방식 : 바우처(Voucher) 방식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후불 지급 원칙)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 Track 01 일반-시험분석·인증 지원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 기타 관련 시험분석 및 인증 비용 지원

지원규모 :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Track 02 지역 혁신기관* 연계 시험분석·인증 지원

- 지역 혁신 주체와 연계한 시험분석 및 인증 관련 비용 지원
(One-Stop, Fast-Track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참여 기관별 의미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사업 기관별 의미 및 역할

- | | |
|---------|--|
| 수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신청기업)으로 특화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시험분석·인증 지원 - 수요 해결 및 성과 창출 |
| 특화지원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개별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수행기관 ➔ 수혜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분석·인증 지원 |

②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

기업 보유기술과 공공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기술 창출 및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제품 고도화 등 사업화 촉진



지원방식

기업 당 최대 70백만원 이내(Track별 상이) 특화분야 C&D 과제지원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	Track 01-1 기업 + 공공연구기관 C&D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콘셉트 검증부터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규모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Track 01-2 기업 + 기업 C&D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딩기업과 기업이 공동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화 전략 도출 및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융복합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지원규모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Track 02 이노폴리스 창업기업 + 공공연구기관 C&D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노폴리스 창업기업-공공연구기관 연계한 사업화 아이템 기술 고도화 지원
지원규모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참여 기관별 의미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 기관별 의미 및 역할

수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신청기업)으로 특화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시험분석·인증 지원 - 수요 해결 및 성과 창출
특화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개별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수행기관 ➔ 수혜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분석·인증 지원

③ INNODESK0807 후속 연계 지원

INNODESK0807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요 발굴 및 Coworking-Group 심의를 거쳐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활동 지원



지원 방식

지원분야별 상이 (최대 5백만원 이내)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전략 수립(BM, 사업 고도화 등)
- 투자 연계를 위한 IR 제작 지원
-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지원대상

- INNODESK0807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중 “국가핵심전략 지역 주력산업”분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



연구소 기업 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3, 시행령 제 13조]

1 설립요건

- 설립 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설립 지역**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본사를 설립
- 설립 주체**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 주식 50% 이상)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설립 자본금**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 이상을 보유

2 설립혜택

세 제 혜 택

- 국 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 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설립 주체 |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연구 기관이란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 등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B비용으로 연간 50%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중심병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 '18.5.8' 특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설립유형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기존기업전환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



4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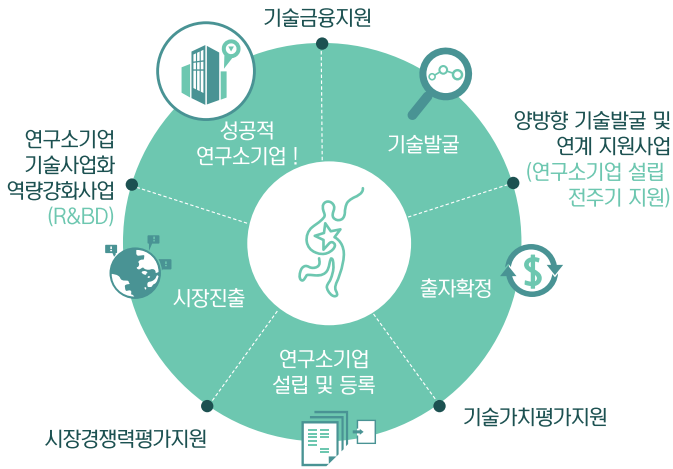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연구소기업 등록



5 지원사업



6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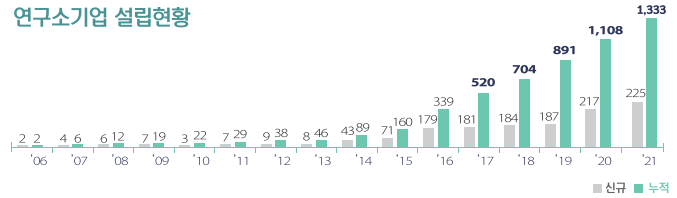
- | | |
|--|-------------------|
| 00 연구기업 등록신청 제출 공문 | 11 연구기업 현황자료 (총괄) |
| 01 연구기업 등록 신청서 | 12 연구기업 성실이행확약서 |
| 02 연구기업 정관 | 13 개인정보동의서 |
| 03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 (본점 운영 현황 포함) | 14 출자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 04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 (주식보유명세서) | 15 출자기관 사업자등록증 |
| 05 연구기업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평가 포함) | |
| 06 연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
| 07 연구기업 사업자등록증 | |
| 08 특허증빙서류 (특허원부, 특허 공개 전문 등) | |
| 09 기술평가서 (기술이전계약서/ 현물출자확약서 등)
기술평가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사업타당성보고서 대체 가능 | |
| 10 연구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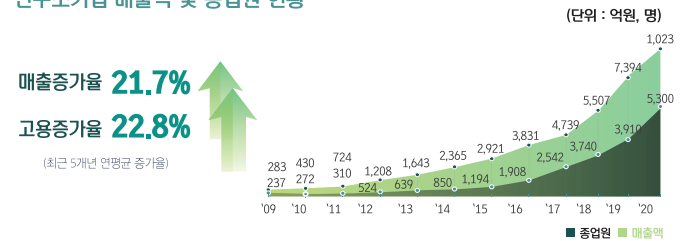
7 성장현황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과 접목하는 연구기업, 기업성장의 견인차입니다.

연구기업 설립현황



연구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



8 대표 성공사례

연구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

콜마 BNH(주)



- 제 1호 연구기업('06년, 원자력연구원)
- 최초 코스닥 상장사 ('15.2.3)
- 대박 연구원 탄생(100억원대 인센티브 예상)
- 연평균 매출액 86% 신장, 고용 39% 증가

사업분야 : 헬스케어 주요제품 : 면역, 항암효과 제품

연구기업 최초 코넥스 상장

(주)수젠택



- 제 28호 연구기업('11년, 전자통신연구원)
- 최초 코넥스 상장사 ('16.11.11)
- 디지털 임신·배란테스트 등 2종 국내 최초 미국 FDA 승인·유럽 연합 CE 인증
- 코스닥상장회사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자체 생산설비 보유

사업분야 : 체외 진단기 주요제품 : 디지털 임신테스트기 등

연구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입니다.

첨단기술기업 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지를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 시행령 제 12조의 3]

1 지정요건

- 특 구 입 주**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입주 절차가 완료된 기업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 출 액**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
- 연 구 개 발 비**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설립 자본금	50억 미만	5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5%	4%	3%

2 신청절차



·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는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3 신청서류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



특허 및 첨단 기술제품 명세서

[관련특허등록원부 (1개월 이내)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현황
- 확인기간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 신고서 사본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첨단기술제품 매출원장]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서류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산정표
-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



주주명부 및 기타

-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

첨단기술기업과 관련된 세부사항 신청절차 확인 및 신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서비스 <http://minwon.innopolis.or.kr>을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4 지정혜택

세 제 혜 택

국 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 방 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첨 단 고 시 혜 택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발급을 통한 혜택

- 법인등록세 증과 제외 [지방세법]
- 과밀억제지역 내 입지지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 우선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지원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입지]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등]

기 타 혜 택

가산점 부여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사업별 공고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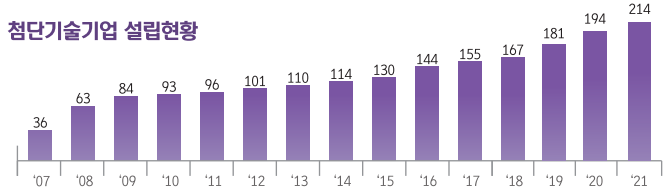
특례 지원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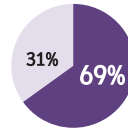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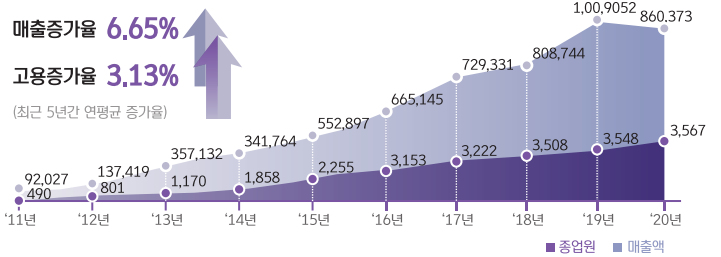
5 성장현황

첨단기술기업 설립현황



첨단기술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첨단기술기업 중 약 **69%**가 재지정
신청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

6 대표성공사례

제24호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2007.10 등록, 총 3회(6년간) 지정)

실리콘웍스

▪ 코스닥 성장일(10.6.8)

실리콘웍스

▪ 지정기간동안 약 170억원 이상의 세제감면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첨단기술기업의 우수사례가 됨

사업분야 : 반도체 제조

제45호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2008.06 등록, 총 3회(6년간) 지정)

골프존

▪ 코스닥 상장일(15.4.3)

GOLFZON

▪ 지정기간동안 약 300억원 이상 세제감면을 수혜받아 신규연구 개발인력 확보 등에 주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사업화의 성공사례로 거듭남

사업분야 : 영상게임기 제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견인차** 첨단기술기업

신기술 실증특례란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분야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어정리 [※ 출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 실증 :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

연구개발특구법 대비 他규제샌드박스 가능 비교대조

구분	연구개발특구법 과기1차관	지역특구법 중기부	정보통신융합법 과기2차관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
대상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존5개, 강소12개)	국제자유특구		전국
적용분야	전 분야	지역별 특정한 혁신산업/사업	ICT 융합분야	산업융합분야
활동주체	공공기관, 연구자 (기업)	신기술·제품·서비스 전문기업		
규제 신속처리		적용 (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 시 30일 내 회신)		
특례 임시허가		적용 (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		
제도 실증특례		적용		
차별성	기술성숙 및 개발 목적 실증특례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 도입

특구 내 밀집되어있는 혁신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연구소기업 등)도 실증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사업 등을 연계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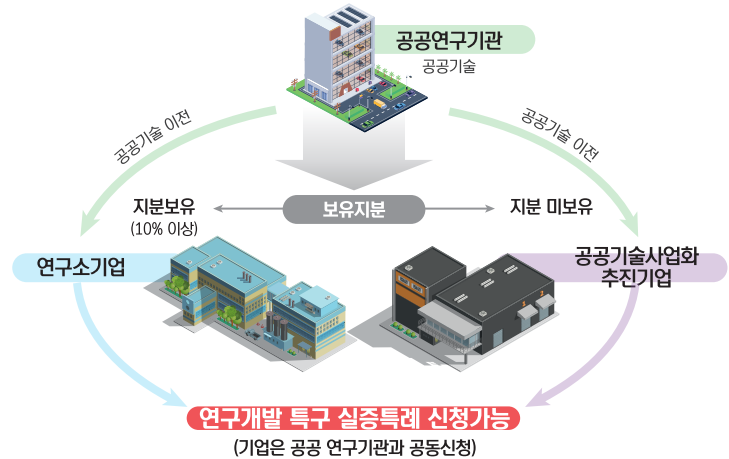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안) 주요내용

제도	· 연구개발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광의적 실증 개념 적용(사제품 시험·검증 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행정	· 특구재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혁신기반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특구 별 실증 원스톱 지역 현장밀착형 지원 · 기술이전 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R&D	·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관, 기업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R&D 예산 지원
데이터	· 기존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사업화과제와 실증특례 데이터를 연계한 연구개발특구 실증 데이터 환류체계 구축
인프라	· 연구개발특구 실증 인프라 통합 허브 구축(온라인) · 필요 시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에 실증단지 개발 포함)하여 공동 활용

2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①공공연구기관 또는 ②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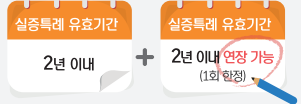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3 유효기간

2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 (1회 한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



- 1 실증특례 연장 신청서
- 2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 3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4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 5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 별도의 배상방안
-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여부를 적은 서류

4 필요서류

- ① 실증특례 신청서 ② 실증특례 계획서 ③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 ④ 안전성 확보 계획서

INNOPOLIS⁺ 
ANSAN INNOVATION CLUSTER
경기안산강소특구



홈페이지 링크

경기안산강소산특구

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로 55 산학협력관 208호

☎ 031-400-4983, 4872, 4873, 4878

✉ ericainnotown@hanyang.ac.kr

🏠 <https://ericainnotown.hanyang.ac.kr/>